國家와 警察을 사랑하는
大韓民國在鄕警友會

# 警友新聞

발행처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우 : 100-82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전 화 : 2234-1881 FAX : 2231-7557
발행인 : 具 弘 壹 편집인 : 玄 誠 一
등록번호 : 문화다05675
창간일 : 1970년 12월 13일

☎ 구독안내 : 02-2234-1881 www.ex-police.or.kr 2005년 12월 6일 (화) 제1334호

# 地域社會 위한 奉仕活動 적극 展開하자

## - 구홍일 회장, 제 4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서 강조 -

제 42주년 「경우의 날」기념행사가 지난 11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구홍일 경우회장, 허준영 경찰청장, 전직 치안총수 및 역대 경우회장, 경찰출신 국회의원, 내외 귀빈, 수도권 거주 경우회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어 경우들의 생일을 자축하고 전현직 유대강화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구홍일 경우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熱情으로 警友會 發展을 위해 獻身하고 계시는 各級會 會長님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들의 勞苦에 대해 깊은 感謝를 드린다.』면서 『지난해 10월, 警友會 中央會長으로 當選된 후, 오랜기간 沈滯에 빠진 警友會 組織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해 全國의 14개 市道會를 비롯한 62개소의 各級會를 방문하면서, 警察官署長을 비롯한 現職 幹部 및 많은 會員들과 만나 진지한 대화와 함께 "前·現職이 하나되자"는 호소를 通하여 前·現職間의 一體感을 造成하고, 警友會 發展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높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구홍일 회장은 『이제 어느 정도 組織活性化의 기틀은 다져졌음으로, 앞으로 警友會 發展의 牽引車 役割을 담당할 企劃調整委員會를 構成(33명)하여, 警友會 운영 관련 각종 法規의 整備, 會員登錄 및 會費制度의 개선, 경찰지원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 방안, 각종 收益事業 開發 등 時代變化에 副應하는 多樣한 組織發展 課題를 選定하여 深度있는 硏究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前·現職 警察人 모두의 宿願인 警察 獨自搜査權 保障을 위한 刑事訴訟法 改正을 要求하는 聲明書를 주요 일간지 및 경우신문에 발표하였고, 全國的인 署名運動을 展開하여, 靑瓦台, 國會 및 各政黨 代表에게 歎願書로 제출하였으며, 警友新聞을 搜査權 관련 특집으로 編成하는 등 積極的인 支援활동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核反對, 韓美同盟 強化, 姜禎求 교수 拘束搜査 促求, 釜山 동의대事件 民主化運動 認定反對 등 自由民主主義와 國家의 正體性을 훼손하거나 公權力을 파괴하는 安保관련 問題 등에 대해서는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중요한 懸案인 警友會館 確保, 器興골프장 共同經營 條件의 改善 等을 위해서도 더욱 心血을 기울여 努力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앞으로 財政自立度 向上을 위한 努力과 함께, 警友會가 治安協力團體라는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警察職務 관련 分野를 中心으로 地域社會를 위한 각종 奉仕活動을 적극 展開하여야 할 것이며, 奉仕活動 實績과 組織活性化 寄與度 등을 正確하게 評價하여 成果中心으로 豫算을 支援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그 어려웠던 시절, 근대화·산업화·민주화의 격랑을 헤쳐오시면서 누란의 國家危機와 社會混亂을 몸을 던져 극복하고, 「질서」와 「봉사」를 최일선에서 실천해 오신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이 역사 발전의 진정한 礎石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청장은 『퇴직 경찰관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경찰병원의 감면진료 범위를 '외래진료'에서 '입원진료'까지 확대하고, 감면대상에 '6.25 참전경찰유공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선배님들이 걸어 오신 과거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경찰 60年史」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자랑스러운 경찰인으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계획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前·現職 首腦部 간담회 개최

## 警友會 및 경찰발전 위한 의견 교환

구홍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단과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수뇌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한마루에서 전현직 晩餐 간담회를 갖고 상호 유대강화 및 경우회 발전과 경찰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면서 『앞으로도 후배 경찰관들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항상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고, 구홍일 경우회장도 『오늘 좋은 자리에 선배 경우들을 초청해 줘서 감사하다』며 『수사권 조정문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허준영 청장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현성일 사무총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현직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경우신문을 수사권 관련 특집으로 편집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경우신문은 前·現職의 소식을 알려주는 가교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찰청 수뇌부에서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 전·의경까지 보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약 10,000여부의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니 현직 수뇌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시작전 구홍일 경우회장, 허준영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搜査權 調整의 核心 論議

—— 이 상 안 (경찰대학 교수)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국민들의 마음 속에 잉태된 지가 오래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수 차례 강조해 왔으므로 국민들의 인식은 강하게 조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검간 수사권 조정문제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벗어나 '정책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정부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심각하게 검토한 '정책의제 설정'(Agenda Setting)까지 마무리 했다는 의미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숱한 의제설정과정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사회적 이슈(Social issue)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수사권 조정의 성격이나 이론적 배경, 그리고 수사권 조정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검 집단간 갈등이 무엇이며 경찰집단에 배분될 수사권의 권익 옹호가 검찰집단에게는 어떤 피해가 생기는가에 대한 일반적 토론이다.

이 과정의 실제 토론에서는 경·검 집단간 혜택(B)과 피해(C) 보다는 국민에 대한 편익논쟁(便益論爭)이 중심이 되었다. 과연 어떤 해결방식이 국민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가 모두 쟁점화 됨으로써 이미 국민은 충분히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적 성격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떤 해결방법을 채택하느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이유 때문에 문제의 내용에 대한 정의와 개념정의는 채택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내용의 정의와 채택될 해결방법의 종류에 대하여 집단들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논쟁이 강하게 어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검간의 수사권 조정의 '사회적 쟁점화'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정부(의회포함)가 직접해결하는 것이 정당하며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공중의제'화 한 다음 '정부의제'로 최종결심하여 성공적으로 '의제화'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국회심의과정에 계류·지체되어 있으며 이 지체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경찰과 검찰집단에 대한 설득과 협상이 필요한데 이 촉매제가 바로 정당성 수준이 높은 논리이다. 이를 다섯가지 공준으로 요약하여 입법가들에게 제언하기로 한다.

〈公準1〉

국민은 3권분립형 형사사법구조를 통하여 완전한 전문성 사법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국민의 '소비자 주권'의 개념이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재판은 '판사'가 할 때 그 '소비자 주권'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기능구조에 의한 인권침해나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다시 재판의 3심제에 의해서 소비자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3권분립형 형사사법체제에 아무런 문제나 염려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은 경찰에 가서 수사받는 고통과 시간낭비를 검찰에 가서 다시 2중, 3중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여유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公準2〉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이미 '정책문제'로 의제화가 완성된 사회문제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단순한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갈등을 이유로 '정책문제'를 방치하거나 지체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를 송두리째 불신시키거나 문제해결의 미궁을 영구히 고착시켜 본래 없었던 상태보다 더 악화시키는 정책실패를 가져오므로 경·검간의 사태악화, 사건교착을 가져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5가지 공준'을 새로운 인식강화의 동기로 삼아 조속 해결하려는 성의를 입법자가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2면 하단에 계속〉


# 檢·警 搜査權 調整, 더 늦출 수는 없다!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정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 2.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밥그릇 다툼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大韓民國在鄕警友會 120萬 會員 一同